

## 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(제9조 관련)

### 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와 횡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횡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(행정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)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.
-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같은 목에 따른 기간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다. 위반행위의 동기, 위반의 정도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개별기준에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.

### 2. 개별기준

위 반 행 위	해당 법조문	처 분 기 준			
		1차 위반 시	2차 위반 시	3차 위반 시	4차 위반 시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, 지정 또는 신고한 경우	법 제13조 제1항제1호	등록·지정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			
나. 업무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	법 제13조 제1항제2호	등록·지정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			
다.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제조, 수리 및 증명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등이 등록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	법 제13조 제1항제3호	해당 업무 일부정지 1개월	해당 업무 일부정지 3개월	해당 업무 일부정지 6개월	등록·지정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
라.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수리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등	법 제13조 제1항제4호	해당 업무 일부정지	해당 업무 일부정지	해당 업무 일부정지	등록·지정 취소 또는

이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		1개월	3개월	6개월	영업소 폐쇄
마.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입업 신고사항을 위반 하여 영업을 한 경우	법 제13조 제1항제5호	해당 업무 일부정지 1개월	해당 업무 일부정지 3개월	해당 업무 일부정지 6개월	등록·지정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
바. 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	법 제13조 제1항제6호	등록·지정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			